

서울특별시 서울 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6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 창업성장센터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0.12.31.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
- 나.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창업성장센터를 기 운영 중인 한국기술벤처재단과 민간위탁(신규) 계약을 체결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6호
 - 민간위탁 추진현황
 - 최초위탁(1차) : '12.9.28. ~ '14.12.31.
(한국기술벤처재단,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)
 - 재계약(2차) : '15.1.1. ~ '17.12.31. (한국기술벤처재단)
 - 재계약(3차) : '18.1.1. ~ '20.12.31. (한국기술벤처재단)
 - 위·수탁 변경 협약 : '19. 5. ('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' 추가)

다.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

- 한국기술벤처재단은 신기술 창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이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,
- 서울 창업성장센터(KIST 소재)의 첨단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인력 및 연구장비 등 KIST의 인적·물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
 -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KIST박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 가능하며(KIST 기술자문 컨설팅)
 - 마이크로 나노팹센터, 특성분석 센터 등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스타트업 제품 개발 지원이 가능함
-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노하우와 다양한 콘텐츠 및 조직, 인력 등을 구비하고 안정적인 보육사업 운영경험을 보유한 기관은 매우 희소함

라.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서울 창업성장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
- 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을 위한 설비 구매 및 시설 공사
- 입주기업 선발·지원·평가·관리 업무
- 수요자 기반 기업 맞춤형(기술사업화, 마케팅 등) 집중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
-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(교육, 네트워킹, 경영진단, 컨설팅 등)

마. 민간위탁 개요

- 위 치 : 성북구 화랑로 14길 5 (홍릉벤처 밸리 BI 內)
- 규 모 : 부지 1,166㎡, 건물규모 3,912㎡ (1개동, 지상3~5층)
- 시설개관 : '12. 9월
- 기 능 : 공간제공, 보육 프로그램 운영, 사업화 지원 등
- 보육규모 : 독립형 보육실 20실 (1,166㎡)
- 소요예산 : 958백만원 ('21년 기준)
- 위탁기간 : 2021.1.1. ~ 2022.12.31. (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신규 수의협약 (한국기술벤처재단)
 - 서울 창업성장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 유형을 변경하고자 (사무형 → 시설형) 신규로 민간위탁 추진

바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제2항

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)

-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-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
※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-89호)

▷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

-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-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투자창업과 동북권창업팀 신봉근 (☎2133-4882)